# 특 허 법 원

제 2 5 - 3 부

판 결

사 건 2022나1296 위약벌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한회사 A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유태용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D

2. 주식회사 E

대표자 사내이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0가합57115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2. 8.

## 주 문

-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워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부분을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1일당 3,000,000원인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9. 12. 1.부터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기간인 2020. 7. 31.까지 244일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서비스표의 1일당 사용료에 해당하는 207,547원1)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인 50,641,468원(=위 1일당 사용료 207,547원 × 244일)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간이하게 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과그 내용,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과정, 원고와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과 같은 합의를 정한 주된 목적과 위 조항을 통해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할

<sup>1) 207,547</sup>원[= 11,000,000원(= 위 사용료 10,000,000원 + 위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00원) ÷ 53일(2019. 10. 9.부터 2019. 11. 30.까지), 원 미만은 버림]

경우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전체 규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 회사 등 사이의 분쟁 경위와 그전개양상,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회사 등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이 정하는 것에 따라 계산한 손해배상의 예정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여 100,000,00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가 각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감액된 100,000,000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4) 피고 회사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중 손해배상 조항<sup>2)</sup>(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은 원고가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피고 회사 측이 서명・날인만 하여 완성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쟁점 조항은 고객인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피고 회사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이 정한바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나) 파단

(1)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 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sup>2) &#</sup>x27;을(피고 회사)은 계약 종료일 이후에 위 상표권이 표시된 광고, 전단, 쇼핑백, 안내판 등을 모두 제거 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위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 1일당 삼백만원(3,000,000원)의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7486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제11조[계약의 수정 등]에는 '본 계약은 지금까지 양 당 사자 간에 교환된 합의와 약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약정을 대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과 아울러, 위 계약서 제13조[특약 사항]에는 '갑(워고)과 을(피고 회사)은 이 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 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앞서 인정한 사실 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쟁점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교섭 없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정 하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쟁점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쟁점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고 가정하더 라도, 쟁점 조항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자의적으 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내용의 불이행과 같은 일정한 사유 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위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및 거래의 관행 등과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쟁점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무효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의 "4) 소결론" 부분을 "5) 소결론"이라고 고쳐 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